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5년 11월 14일(충청북도지사)

나.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4일

다. **상정일자**: 2005년 12월 12일(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가. 제안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저감과 에너지를 절약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 및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

- 안 제3조는 공회전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지역을 지정하였음
- 안 제4조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정하였음
- 안 제5조는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를 정하였음
-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회전 단속을 위한 단속공무원 및 공회전 단속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음
- 안 제8조는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에 관하여 정하였음
- 안 제9조는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권한에 대한 위임규정임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준)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02. 12. 26)으로 광역시장· 도지사가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정 및 제한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저감으로 사회적 비용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안 제3조의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을 터미널·차고자·주차장등으로 정하였는데 자동차전용극장이나, 종합체육관 등 차량 주·정차 밀집지역의 제한지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안 제4조에서 공회전 제한 시간을 5분 이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차량의 종류, 사용 연료등을 고려하여 제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를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 도민의 참여유도와 시민의식전환이 필수적인바 도 및 시군에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방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자동차"라 함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2. "원동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 3. "공회전"이라 함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 4. "터미널"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과「화물유통촉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 터미널을 말한다.
- 5. "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 및 같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를 말한다.
- 6.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 주차장을 말한다.
- 7. "주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신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자동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8. "정차"라 함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자동차가 5분을 초과 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 9.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 및 같은법 시행 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 (이하 "제 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공회전의 제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 자동 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2. 냉동차 · 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4.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 5. 가스사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유사용자동차로서 출발 전 원동기 예열이 불가피한 자동차.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하 5℃ 이하 인 경우로서 10분 이내에 한한다.

- 제6조(공회전 단속공무원) ①도지사는 환경 또는 교통행정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병역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공회전 단속 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단속담당공무원은 모자, 완장, 어깨띠 등을 착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담당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측용시계·온도계, 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회전의 단속) ①단속담당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가 공회전중임을 확인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을 경우에는 공회전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경고를 한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시간을 측정한 결과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비디오 테잎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 료부과 대상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 ③ 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 결과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경우 2인 이상의 단속 공무원이 연서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 공회전 제한지역의 터미널·차고지·주차 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지역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 한다.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업무
 - 4.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제2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부 칙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공회전 제한지역 (IDLING RESTRICTED AREA)



※ 유의사항

- 1. 이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입니다.
- 2. 따라서, 이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과태료부과 대상자동차

NO.

귀하의 자동차는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2 항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군)청 환경보호과에 오시거나, 서면(우편·FAX: 전화번호,회신받을 주소, 인적사항을 필히 기재)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공회전의 제한 위반 이 됩니다.

① 자동차등록번호		②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
③ 위반 장소			
④ 위반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			
도 자동차 공회전 제			
한에 관한 조례 제			
4조)			
⑤ 단속공무원	소속 :		성명 :

(○○○과: ○○시 ○○동 ○○번지, 전화: ○○-○○○, FAX: ○○-○○○)

년 월 일

○○○시장(군수)

자동차 운전자(소유자)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갑)

(행정기관 보관용)

자동치	ト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 화 변	번 호	
소유자	성 명(상호)	생년	[월일		
	주 소		전 화 변	번 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의 제한 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	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성명 단속공무원 소속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서

(을) (운전자 교부용)

자동치	· 등록번호		차	명	
운전자 -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소유자	성 명(상호)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변	호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경 위 자동차를 공회전 제한 지역인 에서 주차(정차)하던 중 공회전 단속공무원의 단속결과 아래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	단속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및 충청북	
도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의 제한시간	
위반	

운전자성명 서명 또는 (인) 단속공무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법령 발췌서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공회전의 제한)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과태료)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8.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